



의안번호	제 2013 - 19 호
보 고 연 월 일	2013. 10. 25. (제52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73차 전체 회의	1
1. 일시·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4. 배임수증재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1
5. 변호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5
II. 제74차 전체 회의	12
1. 일시·장소	12
2. 참석자	12
3. 주요 안건	12
4.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12
5.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23
III. 향후 일정	28

<별첨자료>

최승원, “배임수증재 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III”

주용완, 조석영, “제73차 전문위원단 회의자료 - 배임수증재 관련”

함석천,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검토보고”

주용완, 조석영, “제73차 전문위원단 회의자료 - 변호사법위반”

최승원,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III”

주용완, 조석영, “제74차 전문위원단 회의자료 - 체포·감금·유기·학대 관련”

함석천,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검토보고”

주용완, 조석영, “제74차 전문위원단 회의자료 - 성매매범죄”

함석천,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의견”



I. 제73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3. 9. 30.(월) 16:00 ~ 18:30
- 장소 : 대법원 406호 회의실

2.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노수환, 이수정, 이진국, 조석영, 주용완,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4. 배임수증재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배임수증재 범죄의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1) 양형통계

(가) 수재액별 사건분포 및 실형율

(단위 : 명, %)

범죄	수재액		선고내역		전체	비율
			실형	집행유예		
배임수증재	1천만 원 미만	수	3	19	22	5%
		비율	13.6	86.4	100.0	
	2천만 원 미만	수	5	47	52	12%
		비율	9.6	90.4	100.0	
	3천만 원 미만	수	6	62	68	16%
		비율	8.8	91.2	100.0	
	5천만 원 미만	수	12	49	61	14%
		비율	19.7	80.3	100.0	

(단위 : 명, %)

범죄	수재액		선고내역		전체	비율
			실형	집행유예		
1억 원 미만		수	24	65	89	20%
		비율	27.0	73.0	100.0	
5억 원 미만		수	56	59	115	26%
		비율	48.7	51.3	100.0	
5억 원 이상		수	20	11	31	7%
		비율	64.5	35.5	100.0	
전체		수	126	312	438	100%
		비율	28.8	71.2	100.0	

(나) 수재액별 형량분포(집행유예는 본형 기준)

(단위 : 명, %, 월)

범죄	수재액		형량(월)													평균 형량	
			3	4	6	8	10	12	14	15	18	24	30	36	42		전체
1천만 원 미만		수	0	2	11	7	1	0	0	0	1	0	0	0	0	22	7.18
		비율	0.0	9.1	50.0	31.8	4.5	0.0	0.0	0.0	4.5	0.0	0.0	0.0	0.0	100.0	
2천만 원 미만		수	1	7	24	8	7	4	0	0	0	1	0	0	0	52	7.33
		비율	1.9	13.5	46.2	15.4	13.5	7.7	0.0	0.0	0.0	1.9	0.0	0.0	0.0	100.0	
3천만 원 미만		수	1	1	16	27	17	4	0	0	2	0	0	0	0	68	8.43
		비율	1.5	1.5	23.5	39.7	25.0	5.9	0.0	0.0	2.9	0.0	0.0	0.0	0.0	100.0	
5천만 원 미만		수	1	0	7	19	16	15	0	0	3	0	0	0	0	61	9.69
		비율	1.6	0.0	11.5	31.1	26.2	24.6	0.0	0.0	4.9	0.0	0.0	0.0	0.0	100.0	
1억 원 미만		수	0	0	8	16	32	27	0	1	3	2	0	0	0	89	10.53
		비율	0.0	0.0	9.0	18.0	36.0	30.3	0.0	1.1	3.4	2.2	0.0	0.0	0.0	100.0	
5억 원 미만		수	0	0	5	4	20	41	1	0	30	10	2	1	1	115	14.66
		비율	0.0	0.0	4.3	3.5	17.4	35.7	0.9	0.0	26.1	8.7	1.7	0.9	0.9	100.0	
5억 원 이상		수	0	0	0	3	2	4	1	0	6	7	5	2	1	31	20.84
		비율	0.0	0.0	0.0	9.7	6.5	12.9	3.2	0.0	19.4	22.6	16.1	6.5	3.2	100.0	
전체		수	3	10	71	84	95	95	2	1	45	20	7	3	2	438	11.35
		비율	0.7	2.3	16.2	19.2	21.7	21.7	0.5	0.2	10.3	4.6	1.6	0.7	0.5	100.0	

(2) 다수의견(강수진, 노수환, 이수정, 이진국,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4단계 분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 2년	1년 - 2년6월	2년 - 3년6월
4	1억 원 이상	1년6월 - 3년	2년 - 3년6월	3년 - 5년

- 법정형(5년 이하)이 동일하고 범죄의 성질이 유사한 뇌물공여,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범죄도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을 기준으로 4단계 분류를 하고 있음 → 양형기준의 통일성·체계성 확보
- 뇌물수수,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등 6단계의 유형분류를 한 범죄들은 법정형이 최고 무기(유기징역은 30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형량분포의 폭이 넓고 소유형을 여러 개로 분류할 필요가 있으나, 배임수재는 법정형이 '5년 이하'에 불과하고, 실제 선고 형량은 '3월 - 3년6월'의 범위에 모두 위치하여, 형량분포의 폭이 좁음 → 다수의 소유형으로 나눌 필요가 없음
- 소수의견은 수재액 5억 원 이상인 사례들의 비율이 낮아도 실제 양형이 차이가 있는 이상 별도의 유형으로 세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수의견의 논리대로라면 수재액 10억 원, 30억 원, 50억 원, 100억 원, 300억 원 등 양형 차이를 발생시키는 모든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세분화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사건비율이 약 7%에 불과한 수재액 5억 원 이상의 사건에 관하여 별도로 소유형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함
- 또한, 수재액 5억 원을 기준으로 한 형량분포(1억 원 ~ 5억 원 : 6월 - 3년6월, 5억 원↑ : 8월 - 3년6월)도 거의 동일하므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달리 하여 수재액에 따른 형량 차이를 반영하면 충분하고, 굳이 별도의 유형으로 권고형량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까지는 없음
- 한편, 형량범위는 유사범죄의 형량범위를 기초로 하되, 운영지원단 제공 양형통계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조정한 것임

(3) 소수의견(조석영, 주용완) : 5단계 분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3년6월
4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1년6월 - 2년6월	2년 - 3년6월	3년 - 4년
5	5억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4년	3년6월 - 5년

- 5억 원 기준으로 평균 형량이 6.18개월 차이를 나타내고, 실행률도 48.7%에서 64.5%로 높아지는 등 5억 원 기준으로 양형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유사범죄들은 법정형이 동일할 뿐 행위태양이나 범죄구성요건이 상이하여 비교대상이 되지 못함
- 사회통념상 수재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범죄는 죄질이 중하므로, 5억 원 미만 범죄와 동일한 유형에 포섭시켜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함

나. 배임증재 범죄의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1) 양형통계

(가) 증재액별 사건분포 및 실행율

(단위 : 명, %)

범죄	증재액		선고내역		전체	비율
			실행	집행유예		
배임증재	1천만 원 미만	수	1	2	3	2%
		비율	33.3	66.7	100.0	
	2천만 원 미만	수	0	6	6	5%
		비율	0.0	100.0	100.0	
	3천만 원 미만	수	3	17	20	15%
		비율	15.0	85.0	100.0	
	5천만 원 미만	수	1	22	23	17%
		비율	4.3	95.7	100.0	
	1억 원 미만	수	2	35	37	28%
		비율	5.4	94.6	100.0	
	5억 원 미만	수	4	34	38	28%

(단위 : 명, %)

범죄	증재액		선고내역		전체	비율
			실형	집행유예		
	5억 원 이상	비율	10.5	89.5	100.0	
		수	1	6	7	5%
	전체	비율	14.3	85.7	100.0	
		수	12	122	134	100%
		비율	9.0	91.0	100.0	

(나) 증재액별 형량분포(집행유예는 본형 기준)

(단위 : 명, %, 월)

범죄	증재액		형량(월)													평균 형량		
			3	4	6	8	10	12	14	15	18	24	30	36	42		전체	
배임증재	1천만 원 미만	수	0	1	2	0	0	0	0	0	0	0	0	0	0	0	3	5.33
		비율	0.0	33.3	66.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2천만 원 미만	수	0	4	0	2	0	0	0	0	0	0	0	0	0	0	6	5.33
		비율	0.0	66.7	0.0	3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3천만 원 미만	수	0	3	10	5	1	1	0	0	0	0	0	0	0	0	20	6.70
		비율	0.0	15.0	50.0	25.0	5.0	5.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5천만 원 미만	수	1	2	12	5	1	1	0	0	1	0	0	0	0	0	23	7.09
		비율	4.3	8.7	52.2	21.7	4.3	4.3	0.0	0.0	4.3	0.0	0.0	0.0	0.0	0.0	100.0	
	1억 원 미만	수	2	0	18	13	3	1	0	0	0	0	0	0	0	0	37	7.03
		비율	5.4	0.0	48.6	35.1	8.1	2.7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5억 원 미만	수	0	0	7	15	8	4	0	0	4	0	0	0	0	0	38	9.53
		비율	0.0	0.0	18.4	39.5	21.1	10.5	0.0	0.0	10.5	0.0	0.0	0.0	0.0	0.0	100.0	
	5억 원 이상	수	0	0	0	1	0	5	0	0	1	0	0	0	0	0	7	12.29
		비율	0.0	0.0	0.0	14.3	0.0	71.4	0.0	0.0	14.3	0.0	0.0	0.0	0.0	0.0	100.0	
	전체	수	3	10	49	41	13	12	0	0	6	0	0	0	0	0	134	7.86
		비율	2.2	7.5	36.6	30.6	9.7	9.0	0.0	0.0	4.5	0.0	0.0	0.0	0.0	0.0	100.0	

(2) 아래와 같이 의견 일치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6월	4월 - 10월	6월 - 1년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0월	6월 - 1년	10월 - 1년6월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2년

5. 변호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제109조)의 유형분류 및 형량

범위

(1) 양형통계

(가) 수수금액별 형량분포

(단위 : 명, %, 월)

법조	수수한 금품 등의 액수		형량(월)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5	17	18	24	30	36		전체
변호사 법 (제109 조)	1천만 원 미만	수	2	1	6	0	13	1	11	7	2	0	0	0	0	0	0	0	43	6.93
		비율	4.7	2.3	14.0	0.0	30.2	2.3	25.6	16.3	4.7	0.0	0.0	0.0	0.0	0.0	0.0	0.0	100	
	2천만 원 미만	수	0	0	2	0	8	0	10	7	2	1	0	0	1	1	0	0	32	8.94
		비율	0.0	0.0	6.3	0.0	25.0	0.0	31.3	21.9	6.3	3.1	0.0	0.0	3.1	3.1	0.0	0.0	100	
	3천만 원 미만	수	0	0	1	0	2	0	5	6	1	0	0	0	1	0	0	0	16	9.13
		비율	0.0	0.0	6.3	0.0	12.5	0.0	31.3	37.5	6.3	0.0	0.0	0.0	6.3	0.0	0.0	0.0	100	
	5천만 원 미만	수	0	0	1	0	0	0	6	5	4	0	0	0	2	1	0	0	19	11.05
		비율	0.0	0.0	5.3	0.0	0.0	0.0	31.6	26.3	21.1	0.0	0.0	0.0	10.5	5.3	0.0	0.0	100	
	1억 원 미만	수	0	0	0	0	2	0	6	4	9	0	0	0	4	0	0	0	25	11.20
		비율	0.0	0.0	0.0	0.0	8.0	0.0	24.0	16.0	36.0	0.0	0.0	0.0	16.0	0.0	0.0	0.0	100	
	5억 원 미만	수	0	0	0	0	1	0	6	8	9	1	0	0	7	1	0	1	34	13.00
		비율	0.0	0.0	0.0	0.0	2.9	0.0	17.6	23.5	26.5	2.9	0.0	0.0	20.6	2.9	0.0	2.9	100	
	50억 원 미만	수	0	0	0	0	1	0	2	0	1	0	0	0	3	2	0	0	9	15.11
		비율	0.0	0.0	0.0	0.0	11.1	0.0	22.2	0.0	11.1	0.0	0.0	0.0	33.3	22.2	0.0	0.0	100	
	전체	수	2	1	10	0	27	1	46	37	28	2	0	0	18	5	0	1	178	10.10
		비율	1.1	0.6	5.6	0.0	15.2	0.6	25.8	20.8	15.7	1.1	0.0	0.0	10.1	2.8	0.0	0.6	100	

(나) 전체 형량분포

(단위 : 명, %, 월)

법조	형량	형량(월)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5	17	18	24	30	36		전체
변호사 법 (제109 조)	수	2	1	10	0	27	1	46	37	28	2	0	0	18	5	0	1	178	10.10
	비율	1.1	0.6	5.6	0.0	15.2	0.6	25.8	20.8	15.7	1.1	0.0	0.0	10.1	2.8	0.0	0.6	100	

(다) 수수금액별 선고내역(실형/집행유예)

(단위 : 명, %)

법조	수수한 금품 등의 액수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변호사법 (제109조)	1천만 원 미만	수	16	27	43
		비율	37.2	62.8	100.0
	2천만 원 미만	수	7	25	32
		비율	21.9	78.1	100.0
	3천만 원 미만	수	4	12	16
		비율	25.0	75.0	100.0
	5천만 원 미만	수	7	12	19
		비율	36.8	63.2	100.0
	1억 원 미만	수	6	19	25
		비율	24.0	76.0	100.0
	5억 원 미만	수	15	19	34
		비율	44.1	55.9	100.0
	50억원 미만	수	6	3	9
		비율	66.7	33.3	100.0
	전체	수	61	117	178
		비율	34.3	65.7	100.0

(라) 전체 선고내역(실형/집행유예)

(단위 : 명, %)

법조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변호사법 (제109조)	수	61	117	178
	비율	34.3	65.7	100.0

단위 : 명, %

(2) 다수의견(강수진, 노수환, 이수정, 이진국,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5단계 분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4월	2월 - 8월	6월 - 1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4월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6월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2년6월 - 5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5	1억 원 이상	2년 - 4년	3년 - 6년	4년 - 7년

- '1,000만 원 미만' 및 '1,000만 원~3,000만 원' 구간의 사건비율 (24.15%, 26.96%)이 매우 높아, 각각 별도의 소유형으로 설정하도록 함
- 특히, '1000만 원 미만' 구간은 지인(知人)의 부탁에 따른 1회성 법률 사무 처리가 대부분으로, 별도의 소유형 설정 필요성 큼
- 5억 원 이상은 사건비율이 5.06%에 불과하여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고, 기존 주무위원 안에 포함되어 있던 '3,000만 원 ~ 1억 원' 구간은 수수액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균형 잡힌 형량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3,000만 원 ~ 5,000만 원',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유형을 세분함이 타당함
- 권고 형량범위는 향후 추가로 논의함

(3) 소수의견(조석영, 주용완) : 6단계 분류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8월	6월 - 1년	10월 - 1년6월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2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0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6	5억 원 이상	2년 - 4년	3년 - 6년	5년 -

- 기본적으로 다수의견에 동의하나, 5억 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나.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제111조)의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1) 양형통계

(가) 수수금액별 형량분포

(단위 : 명, %, 월)

법조	수수한 금품 등의 액수	형량(월)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5	17	18	24	30	36	전체		
변호사 법 (제111 조)	1천만 원 미만	수	0	0	8	1	34	0	19	7	4	0	0	0	0	0	0	73	7.00	
	비율	0.0	0.0	11.0	1.4	46.6	0.0	26.0	9.6	5.5	0.0	0.0	0.0	0.0	0.0	0.0	0.0	100		
	2천만 원 미만	수	0	0	5	1	24	0	36	26	11	1	1	0	1	0	0	106	8.45	
	비율	0.0	0.0	4.7	0.9	22.6	0.0	34.0	24.5	10.4	0.9	0.9	0.0	0.9	0.0	0.0	0.0	100		
	3천만 원 미만	수	0	0	0	0	13	0	23	16	21	0	0	0	5	0	0	78	9.79	
	비율	0.0	0.0	0.0	0.0	16.7	0.0	29.5	20.5	26.9	0.0	0.0	0.0	6.4	0.0	0.0	0.0	100		
	5천만 원 미만	수	0	0	0	0	11	0	26	23	23	0	0	1	2	1	0	87	9.85	
	비율	0.0	0.0	0.0	0.0	12.6	0.0	29.9	26.4	26.4	0.0	0.0	1.1	2.3	1.1	0.0	0.0	100		
	1억 원 미만	수	0	0	1	0	2	0	9	13	22	4	2	0	6	3	0	62	12.06	
	비율	0.0	0.0	1.6	0.0	3.2	0.0	14.5	21.0	35.5	6.5	3.2	0.0	9.7	4.8	0.0	0.0	100		
	5억 원 미만	수	0	0	0	0	2	0	2	4	21	1	0	0	16	13	2	67	18.06	
	비율	0.0	0.0	0.0	0.0	3.0	0.0	3.0	6.0	31.3	1.5	0.0	0.0	23.9	19.4	3.0	9.0	100		
	50억 원 미만	수	0	0	0	0	0	0	0	0	0	0	0	0	1	2	1	6	28.0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6.7	33.3	16.7	33.3	100		
	전체	수	0	0	14	2	86	0	115	89	102	6	3	1	31	19	3	8	479	10.76
	비율	0.0	0.0	2.9	0.4	18.0	0.0	24.0	18.6	21.3	1.3	0.6	0.2	6.5	4.0	0.6	1.7	100		

(나) 전체 형량분포

(단위 : 명, %, 월)

법조	형량	형량(월)																	평균 형량
		2	3	4	5	6	7	8	10	12	14	15	17	18	24	30	36	전체	
변호사법 (제111조)	수	0	0	14	2	86	0	115	88	102	6	3	1	31	19	3	8	478	10.76
	비율	0.0	0.0	2.9	0.4	18.0	0.0	24.1	18.4	21.3	1.3	0.6	0.2	6.5	4.0	0.6	1.7	100	

(다) 수수금액별 선고내역(실형/집행유예)

(단위 : 명, %)

법조	수수한 금품 등의 액수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변호사법 (제111조)	1천만 원 미만	수	23	50	73
		비율	31.5	68.5	100.0

법조	수수한 금품 등의 액수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2천만 원 미만	수	31	75	106
	비율	29.2	70.8	100.0
3천만 원 미만	수	32	46	78
	비율	41.0	59.0	100.0
5천만 원 미만	수	37	50	87
	비율	42.5	57.5	100.0
1억 원 미만	수	37	25	62
	비율	59.7	40.3	100.0
5억 원 미만	수	44	23	67
	비율	65.7	34.3	100.0
50억 원 미만	수	6	0	6
	비율	100.0	0.0	100.0
전체	수	210	269	479
	비율	43.8	56.2	100.0

(라) 전체 선고내역(실형/집행유예)

(단위 : 명, %)

법조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변호사법 (제111조)	수	209	269	478
	비율	43.7	56.3	100.0

(2) 다수의견(강수진, 노수환, 이수정, 이진국,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4단계 분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 - 2년	1년 - 2년6월	2년 - 3년6월
4	1억 원 이상	1년6월 - 3년	2년 - 3년6월	3년 - 5년

○ 위 범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범죄와 비교할 때 범죄의 객체(금융기관 임직원/공무원)를 제외하고는 징역형의 범

정형, 행위 유형 등이 동일하므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및 이와 유사한 범죄인 '뇌물공여',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유형분류를 참조함

- 형량범위 설정에 있어서는, 유사범죄들보다 범정이 가벼운 사례가 많으므로, 2, 3, 4 유형에 대하여는 형량범위를 다소 낮게 설정하고, 1 유형은 사건비율이 높으므로 다양한 양형이 가능하도록 유사범죄들과 동일하게 형량범위를 설정함
- 수수액 3,000만 원 미만인 사건이 전체 사건의 53.65%에 이르는 하나, 수수액 1,000만 원 미만인 사건은 전체 사건의 15.24%에 불과하고, 나머지 38.41%의 사건은 '1,000만 원 ~ 3,000만 원' 사이에 분포하므로, 1,000만 원 미만 구간의 별도 설정 필요 없음

(3) 소수의견(조석영, 주용완) : 5단계 분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8월	6월 - 1년 2월	1년 - 1년 6월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6월 - 1년 2월	1년 - 1년 6월	1년 6월 - 2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1년 - 1년 6월	1년 6월 - 2년	1년 8월 - 2년 6월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6월 - 2년	1년 8월 - 2년 6월	2년 6월 - 3년 6월
5	1억 원 이상	1년 8월 - 2년 6월	2년 6월 - 3년 6월	3년 - 5년

- '1,000만 원 미만' 구간과 '1,000만 원~3,000만 원' 구간은 형량분포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3,000만 원 미만에 다수의 사건이 분포하고 있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의 세분화가 필요함
-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범죄들과 형량범위를 달리 설정하고 있는 다수의 의견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다.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 금품 수수(제110조)의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에 관한 의견

-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제111조)와 동일한 형량범위표를 사용하는 데 의견 일치
- 다만, ① 상한과 하한을 각 1/2씩 가중하자는 의견, ② 상한과 하한을 각 1/3씩 가중하자는 의견, ③ 양형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 ④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와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형량범위를 달리 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됨
- 차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II. 제74차 전체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13. 10. 15.(화) 16:00 ~ 19:00
- 장소 : 대법원 406호 회의실

2.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혜정, 노수환, 범현, 조석영, 주용완,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4.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유형분류

- (1) 기존 유형분류를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기로 의견 일치
 - (가) 체포·감금죄

- 최초에는 일반체포·감금과 중체포·감금을 각각 별도의 소유형으로 설정하기로 하였으나, 중체포·감금(7년 이하)은 일반체포·감금(5년 이하)과 법정형이 큰 차이가 없고, 실제 형량분포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므로, 두 범죄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음 → 중체포·감금을 일반체포·감금 유형에 포섭시키되, '가혹한 행위가 있는 경우'를 양형인자(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함

< 수정 전 >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2	중체포·감금			
3	보복목적 체포·감금			
4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			

< 수정 후 >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2	보복목적 체포·감금			
3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			

(나) 유기·학대죄

- 최초에는 '학대/영아유기'와 '일반유기'를 각각 별도의 소유형으로 설정하기로 하였으나, '학대/영아유기(2년 이하)와 '일반유기(3년 이하)'의 법정형 차이가 크지 않은 점, 실제 형량분포도 차이가 없는 점, 영아유기는 6.25 직후 형법이 제정될 무렵 원치 아니한 출산으로 영아를 유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일시적 사회상황이 고려되어 법정형이 가볍게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적극적 행위인 학대는 소극적 부작위에 가까운 일반유기 이상으로 죄질이 중한 사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두 범죄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음 → '학대/영아유기'와 '일반유기'를 통합하여 '일반 유기·학대' 유형으로 설정하고, 형량범위도 동일하게 권고

하도록 함

< 수정 전 >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학대/영아유기			
2	일반유기			
3	중한 유기·학대			

< 수정 후 >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유기·학대			
2	중한 유기·학대			

(2) 기존에 의견이 일치했으나 새로운 이견이 제시된 부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기존에는 ‘체포·감금치상’의 단일한 소유형을 설정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제74차 회의에서는 ‘체포·감금치상’과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치상’의 2개의 소유형을 설정하자는 소수의견이 제시됨

(가) 다수의견(강수진, 범현,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기존 안 유지(단일한 소유형 설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상			

- ‘체포·감금치상’은 일반 체포·감금에 의한 경우와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에 의한 경우에 있어 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동일함 → 단일한 소유형을 설정하는 것이 논리적임
- 다수의견도 ‘상습범, 누범, 흉기 휴대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게 될 것이므로, 죄질이 중한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으로 인한 상해를 가중처벌하게 됨 → 실질적으로 소수의견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며, 굳이 유형을 세분할 필요 없음
- 소수의견은 ‘상습범, 누범, 흉기 휴대 등’ 이외에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더 있을 경우에는 일부 인자가 양형에 반영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특별가중인자가 2개를 초과하여 존재할 경우 권고영역 자체를 더 이상 변동시키지 못하더라도 특별가중영역 내에서 구체적 형량을 정하는 데에는 모든 인자를 반영할 수 있으며, ‘상습범, 누범, 흉기 휴대 등’ 이외에 특별가중인자가 3개 이상 존재할 경우에는 소수의견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함

- 또한, 실제로 ‘상습범, 누범, 흉기 휴대 등’ 이외에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더 있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나) 소수의견(김혜정, 노수환, 조석영, 주용완) : 소유형을 2개로 구별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상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치상			

-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치상은 일반적인 체포·감금치상보다는 죄질이 중하므로, 형량범위를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의견은 체포·감금치상은 기본범죄인 일반 체포·감금에 의한 경우와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동일하므로 단일 유형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나, 동일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지라도 ‘일반 체포감금’과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은 행위 반가치가 서로 다르고 후자의 위험성은 더 크기 때문에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더 논리적임
- 다수의견과 같이 ‘상습범, 누범, 흉기 휴대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경우에는 위 인자 이외에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더 있을 경우에는 일부 인자가 양형에 반영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즉 인자가 1개 더 있을 때에는 특별가중영역에 해당되지만,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더 이상 형량범위가 변동될 수 없음)
- 소수의견과 같은 분류 방식은 강도범죄군, 성범죄군 등 다른 범

최근에서도 마찬가지로 채택하고 있음

나. 권고 형량범위(체포·감금)

(1) 양형통계

(가) 세부죄명별 선고내역

(단위 : 명, %)

세부죄명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체포 범죄	직권남용체포	수	1	0	1
		비율	100.0	0.0	100.0
	체포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체포치상	수	2	9	11
		비율	18.2	81.8	100.0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 체포)	수	0	5	5
		비율	0.0	100.0	100.0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상습 체포)	수	1	0	1
		비율	100.0	0.0	100.0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 흥기등체포)	수	1	2	3	
	비율	33.3	66.7	100.0	
감금 범죄	감금	수	10	42	52
		비율	19.2	80.8	100.0
	감금교사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감금치사	수	3	1	4
		비율	75.0	25.0	100.0
	감금치상	수	17	83	100
		비율	17.0	83.0	100.0
	존속감금	수	0	2	2
		비율	0.0	100.0	100.0
	중감금	수	0	6	6
		비율	0.0	100.0	100.0
	중감금치상	수	2	1	3
		비율	66.7	33.3	100.0
특수감금	수	0	2	2	

(단위 : 명, %)

세부죄명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특수감금치상	비율	0.0	100.0	100.0
		수	0	4	4
	특수중감금치상	비율	0.0	100.0	100.0
		수	1	0	1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 감금)	비율	100.0	0.0	100.0
		수	17	71	88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 감금)교사	비율	19.3	80.7	100.0
		수	1	0	1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 존속감금)	비율	100.0	0.0	100.0
		수	0	2	2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공동감금)	비율	0.0	100.0	100.0
		수	0	7	7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감금)	비율	0.0	100.0	100.0
		수	0	2	2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감금)	비율	0.0	100.0	100.0	
	수	7	26	33	
유기 범죄	영아유기	비율	21.2	78.8	100.0
		수	3	36	39
	영아유기치사	비율	7.7	92.3	100.0
		수	0	3	3
	유기	비율	0.0	100.0	100.0
		수	0	6	6
	유기치사	비율	0.0	100.0	100.0
		수	4	8	12
	존속유기치사	비율	33.3	66.7	100.0
		수	0	2	2
	존속유기치사	비율	0.0	100.0	100.0
		수	0	2	2
학대 범죄	학대	비율	0.0	100.0	100.0
		수	0	2	2
	학대치사	비율	0.0	100.0	100.0
		수	1	0	1
학대치사	비율	100.0	0.0	100.0	
	수	1	0	1	

(단위 : 명, %)

세부죄명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전체	수	71	324	395
	비율	18.0	82.0	100.0

(나) 세부죄명별 형량분포

(단위 : 명, %, 월)

세부죄명		형량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3	4	5	6	8	10	12	18	24	30	36	48	60			180
체포 범죄	직권남용체포	수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8.0
		비율	0.0	0.0	0.0	0.0	1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체포	수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8.0
		비율	0.0	0.0	0.0	0.0	1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체포치상	수	0	0	0	2	4	0	5	0	0	0	0	0	0	0	11	9.5
		비율	0.0	0.0	0.0	18.2	36.4	0.0	45.5	0.0	0.0	0.0	0.0	0.0	0.0	0.0	100	
	폭처법(공동 체포)	수	0	0	0	3	1	0	1	0	0	0	0	0	0	0	5	7.6
		비율	0.0	0.0	0.0	60.0	20.0	0.0	20.0	0.0	0.0	0.0	0.0	0.0	0.0	0.0	100	
	폭처법(상습 체포)	수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12.0
		비율	0.0	0.0	0.0	0.0	0.0	0.0	100	0.0	0.0	0.0	0.0	0.0	0.0	0.0	100	
폭처법 (집단·흥기등 체포)	수	0	0	0	0	0	0	2	0	1	0	0	0	0	0	3	16.0	
	비율	0.0	0.0	0.0	0.0	0.0	0.0	66.7	0.0	33.3	0.0	0.0	0.0	0.0	0.0	100		
감금 범죄	감금	수	1	6	0	27	7	7	4	0	0	0	0	0	0	52	7.0	
		비율	1.9	11.5	0.0	51.9	13.5	13.5	7.7	0.0	0.0	0.0	0.0	0.0	0.0	0.0		100
	감금교사	수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8.0
		비율	0.0	0.0	0.0	0.0	1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감금치사	수	0	0	0	0	0	0	0	0	2	0	0	1	1	0	4	39.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50.0	0.0	0.0	25.0	25.0	0.0	100	
	감금치상	수	0	0	0	23	30	15	24	6	2	0	0	0	0	0	100	9.7
		비율	0.0	0.0	0.0	23.0	30.0	15.0	24.0	6.0	2.0	0.0	0.0	0.0	0.0	0.0	100	
	존속감금	수	0	0	0	0	0	1	1	0	0	0	0	0	0	0	2	11.0
		비율	0.0	0.0	0.0	0.0	0.0	50.0	50.0	0.0	0.0	0.0	0.0	0.0	0.0	0.0	100	
	중감금	수	0	0	0	1	1	4	0	0	0	0	0	0	0	0	6	9.0
		비율	0.0	0.0	0.0	16.7	16.7	66.7	0.0	0.0	0.0	0.0	0.0	0.0	0.0	0.0	100	
	중감금치상	수	0	0	0	1	0	1	0	0	0	1	0	0	0	0	3	15.3
		비율	0.0	0.0	0.0	33.3	0.0	33.3	0.0	0.0	0.0	33.3	0.0	0.0	0.0	0.0	100	
특수감금	수	0	0	0	0	2	0	0	0	0	0	0	0	0	0	2	8.0	

(단위 : 명, %, 월)

세부죄명	형량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3	4	5	6	8	10	12	18	24	30	36	48	60	180		
	비율	0.0	0.0	0.0	0.0	1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17.5
	특수감금치상 비율	0.0	0.0	0.0	0.0	0.0	25.0	0.0	50.0	25.0	0.0	0.0	0.0	0.0	0.0	100	
	특수중감금치상 수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	30.0
	특수중감금치상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0.0	0.0	0.0	0.0	100	
	폭처법(공동 감금) 수	0	6	1	39	23	7	7	3	2	0	0	0	0	0	88	8.0
	폭처법(공동 감금) 비율	0.0	6.8	1.1	44.3	26.1	8.0	8.0	3.4	2.3	0.0	0.0	0.0	0.0	0.0	100	
	폭처법 (공동감금)교 사 수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8.0
	폭처법 (공동감금)교 사 비율	0.0	0.0	0.0	0.0	1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폭처법 (공동존속감 금) 수	0	0	0	2	0	0	0	0	0	0	0	0	0	0	2	6.0
	폭처법 (공동존속감 금) 비율	0.0	0.0	0.0	1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폭처법 (단체등의공동 감금) 수	0	0	0	0	0	0	2	5	0	0	0	0	0	0	7	16.3
	폭처법 (단체등의공동 감금) 비율	0.0	0.0	0.0	0.0	0.0	0.0	28.6	71.4	0.0	0.0	0.0	0.0	0.0	0.0	100	
	폭처법 (야간·공동감 금) 수	0	0	0	2	0	0	0	0	0	0	0	0	0	0	2	6.0
	폭처법 (야간·공동감 금) 비율	0.0	0.0	0.0	1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폭처법 (집단·흥기등 감금) 수	0	0	0	0	2	0	22	6	2	0	0	0	0	1	33	18.7	
폭처법 (집단·흥기등 감금) 비율	0.0	0.0	0.0	0.0	6.1	0.0	66.7	18.2	6.1	0.0	0.0	0.0	0.0	3.0	100		
유기 범죄	영아유기 수	0	7	2	23	5	1	0	1	0	0	0	0	0	39	6.3	
	영아유기 비율	0.0	17.9	5.1	59.0	12.8	2.6	0.0	2.6	0.0	0.0	0.0	0.0	0.0	100		
	영아유기치사 수	0	0	0	0	0	1	0	1	1	0	0	0	0	3	17.3	
	영아유기치사 비율	0.0	0.0	0.0	0.0	0.0	33.3	0.0	33.3	33.3	0.0	0.0	0.0	0.0	100		
	유기 수	0	2	0	3	0	1	0	0	0	0	0	0	0	6	6.0	
	유기 비율	0.0	33.3	0.0	50.0	0.0	16.7	0.0	0.0	0.0	0.0	0.0	0.0	0.0	100		
유기치사 수	0	0	0	1	0	0	0	1	8	0	1	0	1	12	26.0		
유기치사 비율	0.0	0.0	0.0	8.3	0.0	0.0	0.0	8.3	66.7	0.0	8.3	0.0	8.3	100			
존속유기치사 수	0	0	0	0	0	0	0	0	0	2	0	0	0	2	30.0		
존속유기치사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0.0	0.0	0.0	100			
학대 범죄	학대 수	0	0	0	0	0	1	1	0	0	0	0	0	0	2	11.0	
	학대 비율	0.0	0.0	0.0	0.0	0.0	50.0	50.0	0.0	0.0	0.0	0.0	0.0	0.0	100		
	학대치사 수	0	0	0	0	0	0	0	0	0	0	0	1	0	1	60.0	
	학대치사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0.0	100		
전체	수	1	21	3	127	79	40	70	25	19	4	1	1	3	1	395	10.6
	비율	0.3	5.3	0.8	32.2	20.0	10.1	17.7	6.3	4.8	1.0	0.3	0.3	0.8	0.3	100	

(2) 일반적 기준

(가) 제1안(주무위원 검토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2월 - 8월	6월 - 1년	10월 - 1년6월
2	보복목적 체포·감금	4월 - 1년4월	10월 - 2년	<u>1년</u> - 2년6월
3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	6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 제2안과 의견이 대립되는 ‘보복목적 체포·감금’의 경우, 법정형이 동일한 보복목적 폭행, 보복목적 협박의 권고 형량범위(감경: 4월-1년4월, 기본: 10월-2년, 가중: 1년-2년6월)를 참조한 것임
- 운영지원단 통계분석결과, 분석기간 동안 보복목적 체포·감금 범 죄에 대한 실제 선고사례가 없으므로, 위 유사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조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이라 하겠음

(나) 제2안(주용완 위원 검토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2월 - 8월	6월 - 1년	10월 - 1년6월
2	보복목적 체포·감금	4월 - 1년4월	10월 - 2년	<u>1년4월</u> - 2년6월
3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	6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 제1안에 의할 때 보복목적 체포·감금 가중영역 하한이 감경영역 상한보다 낮은 것은 문제이므로, 가중영역 하한을 감경영역 상한 과 동일하게 1년4월로 일치시킴

(3)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1안(최승원, 최진녕, 함석천)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상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 체포·감금치상(1년 이상)과 법정형이 거의 비슷한 중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량범위(감경 : 6월-1년6월, 기본 : 1년-2년, 가중 : 1년6월-3년)와 동일하게 설정함
- 중상해, 폭행치상 모두 가중영역 상한을 3년으로 정하고, 죄질이 중한 범죄는 특별가중영역(1년6월-4년6월)에 포함시켜 가중처벌하거나 이탈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체포·감금치상 역시 동일하게 처리함이 타당함 → 체포·감금치상만 위 범죄들과 달리 가중영역 상한을 높이자는 제1-2안의 주장은 양형기준의 체계성, 통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함
- 제2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형을 2개로 구별하는 유형분류 자체가 잘못된 것임

(나) 제1-2안(강수진, 범현, 최준혁)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상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 감경영역, 기본영역에 관하여는 1-1안에 동의하나, 가중영역 상한이 너무 낮아 중상해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중한 사안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가중영역 상한만 다소 높여야 함

(다) 제2안(김혜정, 노수환, 조석영, 주용완)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상	6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3년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치상	1년 - 3년	2년 - 4년	3년 - 5년

- 상습·누범·특수 체포·감금치상에 관하여는 앞서 유형 분류에 관해 제시한 논거처럼, 일반적인 체포감금 치상과 별도의 소유형으로 구분하고 형량범위의 상한, 하한을 각 2배 정도씩 가중하여 형량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죄질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임

(4)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다수의견(강수진, 김혜정, 노수환, 조석영, 주용완, 최준혁, 함석천)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 체포·감금치사와 법정형이 동일한 상해치사(3년 이하)의 형량범위(감경 : 2년-4년, 기본 : 3년-5년, 가중 : 4년-7년)와 동일하게 형량범위 설정
- 소수의견은 체포·감금치사와 법정형이 동일한 또 다른 범죄인 폭행치사와 동일하게 형량범위를 설정하고자 하나, 체포·감금치사는 폭행치사보다는 상해치사에 가까운 범죄임

(나) 소수의견(범현, 최승원, 최진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체포·감금치사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 체포·감금치사와 법정형이 동일한 폭행치사(3년 이하)의 형량범위(감경 : 1년6월-3년, 기본 : 2년-4년, 가중 : 3년-5년)와 동일하게 형량범위 설정
- 상해치사는 체포·감금치사 보다는 죄질이나 범정이 중한 범죄가 많으므로, 폭행치사와 동일하게 형량범위를 설정함이 타당함

다. 권고 형량범위(유기·학대)

(1) 일반적 기준 : 아래와 같이 의견 일치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유기·학대	- 8월	2월 - 1년	6월 - 1년6월
2	중한 유기·학대	2월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안(주무위원 검토안)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학대치상	2월 - 1년6월	4월 - 2년	6월 - 3년

- 유기·학대 행위로 중상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섭하기 위하여 각 영역의 상한은 중상해와 동일하게 설정함
 - 유기·학대치상의 법정형(7년 이하)은 중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보다는 가볍고 상해와 동일하므로, 각 영역의 하한은 상해와 동일하게 설정함
 - 폭행치상도 이와 동일한 이유로 위 형량범위와 같이 설정되었음
- (나) 제2안(주용완 위원 검토안)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학대치상	2월 - 1년6월	6월 - 2년	1년 - 3년

- 제1안에 의할 때에는 기본영역 및 가중영역의 하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중첩범위가 넓으므로, 이를 위와 같이 다소 조정함이 타당함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아래와 같이 의견 일치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학대치사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5.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양형기준 설정범위

(1) 성판매강요 중 제18조 제3항 부분(감금, 단체 위력 등 성판매강요)

- (가) 다수의견(강수진, 김혜정, 노수환, 범현, 조석영, 주용완, 최준혁) : 포함
-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 2항 범죄 등 기본적인 성판매강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면서 그 가중 규정에 대하여도 양형기

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제18조 제4항(마약 등에 의한 성판매 강요)은 감금 등 성판매강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 경우 양형인자로 반영하고 유형분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나) 소수의견(최승원, 최진녕, 함석천) : 제외

- 최근 5년간 선고 사례가 없고, 행위유형, 구성요건 등이 일반적인 성판매 범죄와 차이가 있음 → 통일적인 양형인자 추출 등 양형기준 설정에 곤란한 점이 있음

(2)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배포·소지 등 행위(아청법 제11조)

(가) 다수의견(김혜정, 노수환, 범현,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 제외

- 음란물 '제작'의 개념이 불확정적이므로, 현 단계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움
- 소수의견은 '제작' 개념은 유무죄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양형과는 무관하다고 하나, '제작' 개념이 중한 행위로 제한될 경우에는 형량범위가 좁은 범위에서 높게 설정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로 개념이 확대될 경우에는 형량범위가 더 넓게 설정될 것이므로, '제작' 개념의 확정인 양형기준 설정에도 필요한 것임
- 또한, 음란물 제작 등 범죄는 성매매 범죄와는 논리적, 이론적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로 별도로 양형기준을 설정함이 타당하며, 성매매 범죄와 함께 양형기준이 설정될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범죄들이 하나의 범죄군에 포함되어 양형기준의 체계성 측면이나 양형기준 수요자의 활용의 편의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또한, 피씨방 등에 대한 일제단속 과정에서 운영자가 일일이 관리하기 힘든 수 만 건의 영상물 가운데 소수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발견되어 운영자가 엄한 처벌을 받는 것에 관하여 다소 과잉된 처벌이라는 사회적 여론도 있으므로, 음란물 제작 등 범

죄의 처벌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확립된 이후 신중하게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나) 소수의견(강수진, 조석영, 주용원) : 포함

-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군을 의결할 때 성매매만을 대상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음란물 제작 등 범죄도 양형기준 설정대상이 될 수 있음
- 음란물 제작 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양형기준 설정대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 모든 음란물이 아닌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의 법정형을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반드시 설정되어야 함
- 피씨방 등에서 단속 중 음란물이 발견된 경우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감경적 양형인자로 반영할 수 있음
- ‘제작’ 개념의 불확정은 범죄 혐의 인정의 문제로, 유죄 인정 이후 형량을 정하는 양형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음

나. 권고 형량범위

(1) 양형통계

(가) 실형과 집행유예

법조별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	제18조 제1항	수	1	1	2
		비율	50.0	50.0	100.0
행위의처벌에	제18조 제2항	수	1	3	4
		비율	25.0	75.0	100.0
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수	1	0	1
		비율	100.0	0.0	100.0

	제19조 제1항	수	2	27	29
		비율	6.9	93.1	100.0
	제19조 제2항	수	68	410	478
		비율	14.2	85.8	1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수	45	192	237
		비율	19.0	81.0	100.0
	제14조 제1항	수	6	16	22
		비율	27.3	72.7	100.0
	제14조 제2항	수	8	1	9
		비율	88.9	11.1	100.0
	제14조 제3항	수	5	11	16
		비율	31.3	68.8	100.0
	제15조 제1항	수	5	4	9
		비율	55.6	44.4	100.0
	제15조 제2항	수	2	12	14
		비율	14.3	85.7	100.0
전체		수	144	677	821
		비율	17.5	82.5	100.0

(2) 형량 분포

법조별		징역(형량)														전체	평균	
		3	4	5	6	7	8	10	12	14	18	24	30	36	42			
성매매 선박 영양 의치 별 에 관 한 법	제18조 제1항	수	0	0	0	0	0	0	1	0	0	1	0	0	0	0	2	14.0
		비율	0.0	0.0	0.0	0.0	0.0	0.0	50.0	0.0	0.0	50.0	0.0	0.0	0.0	0.0	100.0	
	제18조 제2항	수	0	0	0	1	0	0	0	2	0	1	0	0	0	0	4	12.0
		비율	0.0	0.0	0.0	25.0	0.0	0.0	0.0	50.0	0.0	25.0	0.0	0.0	0.0	0.0	100.0	
	제18조 제3항	수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24.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제19조 제1항	수	0	2	0	16	0	7	1	3	0	0	0	0	0	0	29	7.1	
	비율	0.0	6.9	0.0	55.2	0.0	24.1	3.4	10.3	0.0	0.0	0.0	0.0	0.0	0.0	100.0		

법조별		징역(형량)														전체	평균
		3	4	5	6	7	8	10	12	14	18	24	30	36	42		
률	제19조 수	1	37	2	144	1	155	77	47	2	10	2	0	0	0	478	8.1
	제2항 비율	0.2	7.7	0.4	30.1	0.2	32.4	16.1	9.8	0.4	2.1	0.4	0.0	0.0	0.0	10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수	1	16	8	102	0	55	22	26	1	4	2	0	0	0	237	7.7
	제1항 비율	0.4	6.8	3.4	43.0	0.0	23.2	9.3	11.0	0.4	1.7	0.8	0.0	0.0	0.0	100.0	
	제14조 수	0	0	0	0	0	0	0	0	0	9	5	6	1	1	22	24.5
	제1항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40.9	22.7	27.3	4.5	4.5	100.0	
	제14조 수	0	1	0	0	0	0	0	0	0	0	0	1	2	5	9	35.1
	제2항 비율	0.0	11.1	0.0	0.0	0.0	0.0	0.0	0.0	0.0	0.0	0.0	11.1	22.2	55.6	100.0	
	제14조 수	0	1	0	3	0	2	2	5	0	2	1	0	0	0	16	11.1
	제3항 비율	0.0	6.3	0.0	18.8	0.0	12.5	12.5	31.3	0.0	12.5	6.3	0.0	0.0	0.0	100.0	
	제15조 수	0	0	0	0	0	0	0	0	0	0	1	4	0	4	9	34.7
	제1항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1.1	44.4	0.0	44.4	100.0	
제15조 수	0	3	0	4	0	2	0	5	0	0	0	0	0	0	14	8.0	
제2항 비율	0.0	21.4	0.0	28.6	0.0	14.3	0.0	35.7	0.0	0.0	0.0	0.0	0.0	0.0	100.0		
전체	수	2	60	10	270	1	221	103	88	3	27	12	11	3	10	821	9.1
	비율	0.2	7.3	1.2	32.9	0.1	26.9	12.5	10.7	0.4	3.3	1.5	1.3	0.4	1.2	100.0	

(3) 다음과 같이 주무위원 검토안이 제시되었으며,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가) 19세 이상 대상 범죄

- 성판매 강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판매 강요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등 성판매 강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 성매매 알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영업·대가수수등 성매매 알선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나) 19세 미만 대상

- 성매수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성매수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 성판매 강요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판매 강요 / 영업 성판매 유인·권유	1년6월 - 4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대가수수등 성판매 강요	2년 - 4년	3년 - 7년	5년 - 8년

- 성매매 알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판매 유인·권유 / 영업 성매수 유인·권유·강요 / 장소·정보 제공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2	업으로 성매수 알선 / 업으로 장소·정보 제공	2년 - 4년	3년 - 7년	5년 - 8년

III. 향후 일정

○ 제75차 전문위원 전체회의 : 2013. 11. 4. 16:00(안건 추후 확정)